취업지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09.11. 1.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개정 2015. 9. 1.
개정 2015.10.14.
개정 2022. 7. 1.
개정 2023. 7. 1.
개정 2024. 9.25.
개정 2025. 8.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진로 설정, 취업 지원,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1.11.1.)(개정 2025.8.27.)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 취·창업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1.1., 2015.9.1., 2022.7.1., 2023.7.1., 2024.9.25.)

② 위원회의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산하에 진로취업지도교수를 두며, 학과(전공)별 진로취업지도교수는 학과(전공)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1., 2025.8.27.)

1. (삭제 2025.8.27.)
2. (삭제 2025.8.27.)

④ 진로취업지도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한다. (신설 2025.8.27.)

1.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관련 DB 구축 및 관리
2. 학과(전공)별 진로·취업 지도 계획 수립 및 관리
3. 학과(전공)별 취업률 관리 방안 수립

제3조(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11.11.1.)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별 진로취업지도교수 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2025.8.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3.21.)(전문 개정 2011.11.1.)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안을 심의・결의한다.

1. (삭제 2025.8.27.)
2. (삭제 2025.8.27.)
3. 학과(전공)별 진로취업지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27.)
4. (삭제 2025.8.27.)
5. 대학 취업률 현황 분석 및 취업 활성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27.)
6. (삭제 2025.8.27.)
7. (삭제 2025.8.27.)
8. 학과(전공)별 진로취업지도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27.)

② (삭제 2025.8.27.)

③ (삭제 2025.8.27.)

제6조(보고) ① 위원회는 심의한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11.1.)

제3장 보 칙

제7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11.1.) (개정 2025.8.27.)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1년 11월 1일부터 취업지원센터를 취업지원처로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의 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과 취업지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을 통폐합하여 이 규정으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5년 9월 1일부터 취업지원처 취업지원팀에서 대외협력처 취업지원팀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취업지원운영위원회운영규정을 이관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5년 10월 14일부터 취·창업지원센터로 직제 신설에 따라 취업지원운영위원회운영규정을 대외협력처 취업지원으로부터 이관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